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13
----------	-------

발의연월일 : 2023. 8. 31.

발 의 자 : 강득구 · 최혜영 · 김병욱
김민석 · 송옥주 · 신정훈
최강욱 · 조오섭 · 허종식
이용빈 · 김의겸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양

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 미만”을 “24세 이하”로,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